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비하고,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중복내용 및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저조한 서비스 폐지
  - 홈페이지 마일리지 제도 및 전자메일서비스 폐지 (안 제15조의2, 마일리지 부여 기준 명시된 별표1, 안 제5장, 안 제20조)

○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

- 관련조례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)의 개정으로 홈페이지 개선 의견 수렴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정보화자문위원으로 변경  
(안 제4조)
- 관련법령 개정으로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로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변경(안 제2조제6호, 안 제10조제2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3조제3항, 안 제 14조제2항 ~ 제3항)
-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와 부합되도록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28조 규정 준용 부분 삭제(안 제19조 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본 안건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가 없어 중단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현재 홈페이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법규 개정사항 반영과, 중복내용 및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임.

○ 본 안건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.

첫째,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저조한 서비스를 폐지하였음.

둘째, 관련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.

셋째, 알기 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을 정비하였음.

○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이 저조한 서비스 폐지는

-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이용자 감소로 종료된 전자우편서비스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음.

(안 제15조의2, 별표1, 안 제5장, 안 제20조)

○ 관련법규 개정사항 반영은

- 관련조례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), 관련법령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,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) 개정사항 반영과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관한 사항을 관련조례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)에 부합 되도록 하였음(안 제4조, 안 제2조제6호, 안 제10조제2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3조제3항, 안 제14조 제2항~제3항, 안 제19조제3항)

○ 알기 쉬운 용어 및 중복사항 정비는

- 상위법률에 명시된 중복내용 삭제함.(안 제2조제8항, 안 제22조제 4항)
- 이해하기 쉽고 문맥에 맞도록 문구 정비함.(안 제2조제4항, 안 제5조제2항, 안 제7조제2항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1조제4항, 안 제14조제1항, 안 제21조제 2항, 안 제22조제 2항제1호, 안 제24조)

- 종합의견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정비하고,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정이며, 그 밖에 상위법령 중복내용 조항 정비 및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이용이 저조한 서비스를 정비하고 현재 홈페이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 폐지 (안 제15조의2)

나. 서비스가 중단된 전자우편(e-mail)서비스 관련 조문 삭제 (안 제20조)

다.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문구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

(안 제2조6호, 제4조, 제10조1항 등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4) 인권영향평가 :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충분한 사전안내 필요

- 회원에게 홈페이지 및 메일 발송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안내 실시(예정)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4.13. ~ 5.4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.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구가 특별히”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8. (삭제)

제3조제3항 중 “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”를 “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.)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정보화추진위원회”를 “정보화 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(이하 “담당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담당부서의 장”으로, “게시하여야”를 “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게시 또는 통지하여야”를 “통지하여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설치·운영하여야”를 “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”를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구정예의 참여유도”를 “구정 참여유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

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”을 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를 삭제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28조 규정을”을 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를”로 한다.

제20조 앞에 “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”을 삭제한다.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등에 관한 정보”를 “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외국어”를 “구청장은 외국어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4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201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는 2017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※ 참고사항 : 별표(삭제)

마일리지 부여기준 (조례 제15조의2제3항)

유 형	마일리지	비 고
회원가입	500점	첫 가입시 한번
기존회원	500점	첫 오픈시 한번
홈페이지 로그인	30점	1일 1회 첫 로그인시
정책 제안자	1,000점	제안채택자
정책 참여자	100~1,000점	추천수에 따라 차등지급
설문조사참여자	200점	참여시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이용자”란 <u>구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</u>를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“인터넷 민원”이란 「<u>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 및 <u>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</u>을 말한다.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“개인정보”란 「<u>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</p> <p>9. ~ 11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<u>(이하 “구”라 한다.)</u>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에서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삭제)</p> <p>9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인터넷 홈페이지 설치·운영)</p> <p>①、② (생략)</p> <p>③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주관부서、홈페이지 관리부서(이하 “정보화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、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</p>	<p>제3조(인터넷 홈페이지 설치·운영)</p> <p>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.)</u>----- -----</p>

관에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4조(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) 구 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(생략)

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 (이하 “담당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, 정보제공 시에는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7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① (생략)

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
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선) 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정보화 자문위원회 -----  
-----.

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담당부서의 장-----  
-----  
-----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홈페이지 게시물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다. 다만,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략)

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

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,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전자민원처리) ① ~ ③ (생략)

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⑥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·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통지하여야 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

① -----  
-----  
-----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--.

②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전자민원처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-----  
----- 따라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.

⑦ (생략)

제13조(민원상담) ①、② (생략)

③ 민원상담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 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.

제14조(대화방 운영)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에의 참여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.

③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견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의2(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) ①

구청장은 홈페이지 활성화 또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민원상담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대화방 운영) ① -----

-----구정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-----  
-----.

③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<삭제>

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, 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(mileage)를 운영할 수 있다.

1.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
2. 모사전송 서비스
3. 온라인 자격증 강좌 수강
4.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

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부여 기준은 별표에 의하며,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

③ 구청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유효기한,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9조(수수료) ①, 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」 제

제19조(수수료) ①,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-----  
-----

28조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

제20조(전자우편 서비스 제공) ①

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와 지역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전자우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아이디를 소속 공무원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전자우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, 이용자는 게시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21조(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, 운영) ① (생략)

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, 교류,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.

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, 관리

-----.

〈삭 제〉

〈삭 제〉

제21조(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,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정보-----  
-----

③ 구청장은 외국어 -----  
-----

하여야 하며,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22조(개인정보보호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

2. 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"개인정보 보호책임관"을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24조(비밀번호 관리)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.

제22조(개인정보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

1. ----- 따라 -----  
-----  
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<삭제>

제24조(비밀번호 관리)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따라 -----.